

[별지 제1호서식]<개정 1997.3.24.>

(단위 : 건, ha)

어장이용개발계획서(제2조제4항 관련)

①총개발적지면적	기 개발 어 장			⑤미개발면적	⑥()년 () 개발계획						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상황					⑰개발하고자 하는 사유	
	②어업별	③건수	④면적		⑦어업별			⑧수면의 위치	⑨수면의 번호	⑩건수	⑪면적	⑫국가공익면	⑬자원보호면	⑭어업조정면	⑮수산법규면		⑯기타
					종류	어업의 방법	품 종										

48277-02611 일

‘91.3.27 승인

369mm 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

*기재요령

1. ①의 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기재한다.
2. ②-④란에는 기 개발한 어업의 종류(정치망어업·해조류양식어업·패류양식어업·어류등양식어업·복합양식어업·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)와 건수,면적을 기재한다.
3. ⑤의 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별 총 미개발 적지면적을 기재한다.
4. ⑥의 란에는 앞 ()에는 개발연도를, 뒷 ()에는 정기, 변경이라 기재한다.
5. ⑦의 란에 어업의 방법란에는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,마을어장은 포획·채취수단을 기재한다.
6. ⑧의 란에는 개발계획 수면의 위치(행정구역상 읍·면·동·리·번지명을)기재한다.
7. ⑨의 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기재한다.
8. ⑩의 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의 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기재한다.
9. ⑫의 란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법규의 관련여부를 검토후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10. ⑬의 란에는 보호수면, 수산자원보전지구, 소상어류보호수면등 기타 수산자원 보호상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
11. ⑭의 란에는 보호구역저축, 어장과밀, 어도차단, 어장구역중복, 인근어장과의 분쟁예상등 기타 어업조정상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
12. ⑮의 란에는 낙도, 무인도, 어장기점설치가능여부, 육지와와의 거리, 수심, 인근어장과의 거리, 마을어장안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등과의 관련여부를 기재한다.
13. ⑯의 란에는 기타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기재한다.
14. ⑰의 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.
15. ⑫-⑯의 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"없음"이라 기재한다.